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9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강득구·강민정·고영인

김승원 · 양정숙 · 오영환

위성곤 • 윤영덕 • 이광재

이규민 · 이용빈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,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,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'그린 스마트 스쿨' 사업을 선정하여,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결합형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 법률에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전제 로 추진되는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,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상의 책 무성 분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.

이에,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 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.

또한,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·연구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되, 이용 빈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 신설).
- 나.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,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함(안 제8조 신설).
- 다.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· 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

학교복합시설 운영・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 신설).
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"를 "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학교복합시설의"를 "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"로,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•관리하되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학생의 안전 확보) ① 학교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, 학생과 지역 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-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「국가배상법」,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전문기관)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연구,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법률 제17082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・관 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・관 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리 원칙) <신 설>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· 관리하되.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 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 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①·② (생 략) 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)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・관리 (4) ----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 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-----비영리법인.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 있다. 관에-----.

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신 설>

④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---령령으로 정한다.

> 제8조(학생의 안전 확보) ① 학교 복합시설은 「건축법」 제53조 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,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 는 등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야 한다.

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・관리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,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「국가배상법」,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.

제9조(전문기관)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사 · 분석 및 연구, 자문 등의

<신 설>

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
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
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